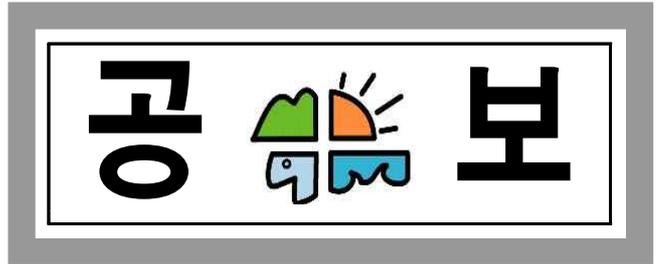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07호 2021년 1월 22일(금)

훈 령

-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2

공 고

- 속초 대포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4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5

입법예고

-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1월 19일

속초시장

(직인)

속초시 훈령 제747호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 대포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 대포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18일

속 초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속초 대포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 속초시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농공단지 위치 :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933번지 일원
 - 농공단지 면적 : 178,424.9㎡
 - 준공인가 면적 : 34,918.5㎡
4. 준공인가연월일 : 2021. 01. 15.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유상공급면적(㎡)	비 고
합 계		178,424.9	139,868.8	
산업시설 용 지	소 계	139,868.8	139,868.8	
	산 업 시 설 용 지	139,327.4	139,327.4	분 양 금회준공(33,841.2㎡)
	지 원 시 설	541.4	541.4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25,114.0		
	도 로	25,114.0		속초시
녹 지 용 지	소 계	13,442.1		
	경 관 녹 지	13,442.1		속초시 금회준공(1,077.3㎡)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01. 19.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01. 21. ~ 2021. 02. 04.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공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2021.01.14.)	손*덕	속초시 중앙동 481-68	건축물 미존재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81-68	지상1층 목조 주택, 슬레이트 25.16㎡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2021.01.15.)	정*화	속초시 중앙동 622-222	건축물 미존재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622-222	지상1층 시멘트블럭조 주택, 슬레이트 27.81㎡

4.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과(☎033-639-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1호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1. 16. ~ 2021. 1. 21.(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1. 1. .

발 의 자 : 방원욱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구 추가로 경제적 부담경감 일조 및 “강원도 백년기업”과 “강원도 및 속초시 명장”으로 인증·선정된 제조업체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업종을 변경 적용하여 기업 경영 애로사항 경감과 동종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조례에 반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조항 신설(안 제5호)

－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추가 적용하여 조항을 개정

나. 중소기업중 상수도요금 업종구분 산업용 적용대상 추가(별표2))

－ “강원도 백년기업”과 “강원도 및 속초시 명장”으로 인증·선정된 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숙련기술장려법」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농공단지”를 “농공단지 등”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그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8. (생략)</p> <p>9. “산업용수”란 <u>농공단지</u>에 산업용으로 공급되는 용수를 말한다.</p> <p>10. (생략)</p> <p>제39조(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5. ~ 7.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농공단지</u> 등 ----- -----.</p> <p>10. (현행과 같음)</p> <p>제39조(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p> <p>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만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명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한다.</u></p> <p>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별표 2]

업종구분표

업종별	업종별	비고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 연탄 · 양곡 · 문방구 · 지물 · 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미만의 업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 강원도 백년기업 인증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 강원도 및 속초시 명장 선정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관계법령 발췌서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도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도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숙련기술 장려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